

# 2024년 제2차 경기도체육진흥공모 운영지침

## 1 목 적

-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개소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현장중심의 참여자 만족도 제고
- 경기도민의 스포츠 참여활동에 따른 체육 저변확대 및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도모

## 2 사업개요

- 사업규모

구 분	유형1 (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 사업)	유형2 (체육대회)
사업기간	2024년 8월 ~ 12월(5개월간)	
장 소	경기도내	
자격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2조(정의) 6호 가, 나, 다에 해당하는 단체 1) 경기도종목단체 2) 시·군체육회 3) 체육활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(경기도 소재)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2조(정의) 6호 나, 다에 해당하는 단체 1) 경기도종목단체 2) 시·군종목단체 3)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(경기도 소재)</li></ul>

\* 동일 사업으로 유형1, 유형2 공모 중복 신청불가

\* 유형1 관련 시·군종목단체는 시·군체육회 또는 도종목단체를 통해 신청

\* 읍면동체육회는 시·군체육회를 통해서만 신청

\* 장애인 체육 단체는 장애인체육회로 참가 문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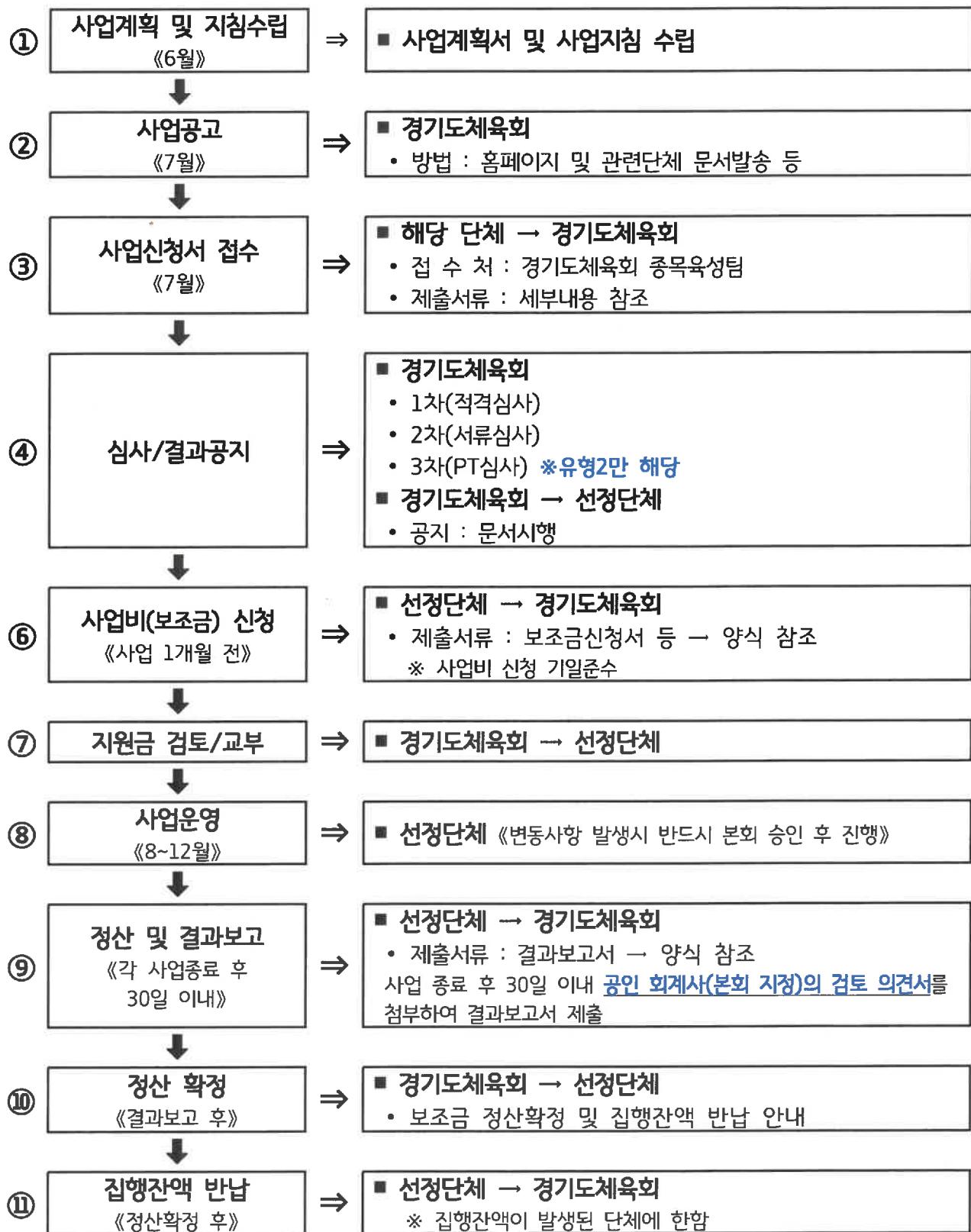
- 사업내용 : 다양한 체육활동 사업 등에 대한 공모·심사를 통한 사업비 지원
- 지원규모 :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(단체별 신청금액 대비 50~100% 지원)
- 지원방법 : 선정단체 공금계좌(법인통장)에 입금[개인계좌 입금 불가]

□ 공모유형

구 분	사업유형1 (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 사업)	사업유형2 (체육대회 지원사업)
공모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2조(정의) 6호 <u>가, 나, 다</u>에 해당하는 단체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종목단체</li> <li>시 · 군체육회</li> <li>체육활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(경기도 소재)</li> </o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2조(정의) 6호 <u>나, 다</u>에 해당하는 단체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종목단체</li> <li>시 · 군종목단체</li> <li>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(경기도 소재)</li> </ol> </li> </ul>
지원 사업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문체육 육성지원</li> <li>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(대면 · 비대면)</li> <li>배려계층 체육용품지원(10개소 이내)</li> <li>각종 대회 및 체육행사 지원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단위 체육행사</li> <li>전국단위 체육행사</li> <li>국제단위 체육행사</li> </ol>
지원 규모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~④ 사업별 30,000천원 이내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회당 50,000천원 이내</li> <li>대회당 100,000천원 이내</li> <li>대회당 150,000천원 이내</li> </ol>
공모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개 사업, 1개 유형으로 신청</li> <li>단체별 공모신청은 <u>3건 이내로</u> 제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개 사업, 1개 유형으로 신청</li> <li>단체별 공모신청은 <u>1건으로</u> 제한</li> </ul>
제한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동일 항목에 대한 국비, 지방비,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 및 중복사업</li> <li>* 선정 이후 동 지침의 고의 누락 등 위배사항 적발 시 사업 승인취소 및 보조금 반환조치</li> <li>본회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</li> <li>보조금 횡령, 유용, 징계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법인 또는 단체 및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</li> <li>신청서 제출 법인(단체)과 실제 운영 법인(단체)이 다를 경우 선정 심사 제외</li> <li>학술 및 연구사업, 임·직원 대상 강습 및 체육대회, 체육시설 관련사업</li> <li>배려계층 대상 사업 중 장애인에 국한한 사업</li> <li>자체 스포츠클럽, 지역친목행사, 읍면동체육행사, 홍보캠페인 관련사업</li> </ul>	

### 3

## 진행절차(안)



\* 사업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

## 4

## 공모내용

□ 사업공고 :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, 관련단체 문서발송 등

□ 신청방법

- 1) 공통서류 : ①공문 ②사업신청서 ③사업계획서 ④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
⑤공모참가 서약서 ⑥금액변동 확인서

\* 제출자료 관련서식 :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공지사항

\* ①공문 누락 시, 접수 개시가 불가하므로 필히 첨부 요망(미비 서류 관련 안내 없음)

- 2) 유형2 추가서류 : ⑦단체소개서 ⑧동일(유사) 사업 수행실적표

### 3) 제출방법

- 공모기간 : 2024. 7. 1.(월) ~ 7. 19.(금) / 19일간
- 제출기간 : 2024. 7. 8.(월) ~ 7. 19.(금) 18:00까지 / 12일간
- 제출방법 : 전자문서, 이메일 중 택1
- 제출처 : 경기도체육회 종목육성팀(☎031-250-0452, 0455)

이메일 : [kyj1206@ggsc.or.kr](mailto:kyj1206@ggsc.or.kr) / [hyunac@ggsc.or.kr](mailto:hyunac@ggsc.or.kr) 중 택1

\* 사업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접수여부를 확인 요망

\*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 시 심의 제외(미비 서류 관련 안내 없음)

- 결과발표 : 2024. 8월 중, 선정단체만 개별 통보 예정

□ 기타사항

-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,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 제출
- 허위 사실 기재,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,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보조금 환수.
- 선정단체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보조금 집행을 위한 사업설명서 배부  
\* 사업설명서는 선정 결과 통보 후, 선정단체에 한하여 일괄 탁송
- 사업 취소신청 : 공문으로만 신청 가능  
\* 취소 미신청 시, 25년 경기도체육진흥공모 사업 참여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

## 5

## 심사위원회 운영(안)

□ 심사위원 구성 : 외부 인사를 활용하여 구성

□ 심사기준

- 경기도내 소재지를 둔 신청단체로 한다.
- 사업개최 장소는 경기도내로 하며 경기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규모 및 사업지원 필요성 및 현실성,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
- 기타 지역 및 종목별 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
- 심사위원별 사업신청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
-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결정

(단 2단계 서류심사시 유형1은 60점 미만, 유형2는 70점 미만일 경우 미선정 처리함)

□ 심사방법

○ 1단계 : 서류심사

- 신청자격,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

○ 2단계 : 적격심사(정량, 정성평가)

-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종합 토론으로 지원여부 판단
- 필요시 원활한 심사를 위한 제안자 질의답변 ※ 진행시 별도 안내
- 개별평가에 따른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액 결정
- 정량평가 :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, 예산편성 등
- 정성평가 : 사업내용, 모집·홍보, 예산편성 적정성 및 효율성

○ 3단계 : PT심사(정량평가) ※ 유형2만 해당

- 심사위원평가에 따른 지원액 결정(PT 발표 점수에 따른 예산 배정)

○ 4단계 : 결과공지

- 발표일정 : 심사종료 후 7일 이내
- 발표방법 : 선정단체 문서 발송

## 6

# 공모사업 예산편성 원칙

### □ 작성시 유의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준수
- 보조금 교부에 따른 “공직선거법” 및 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” 등에 위배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항목 지원 불가
-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
-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
- 자부담 시 실제 집행가능 금액으로 정산보고시 자부담 증빙자료 제출
-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 
⇒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
-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, 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
⇒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
- 편성불가 :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
  - 단체운영 경비 :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구입비, 공과금 등
  - 자본적 경비 : 시설비, 시설부대비, 설비비, 수선비, 자산취득비 등
  - 현금성 경비 : 이웃돕기성금, 진료비 등
  - 차량 유지관리비 : 수리비, 보험료, 유류비 등
  - 기념품(참가자 전원 수령 포함), 시상금(시상품 포함), 임원피복비, 대회출전비, 국제대회 참가자, 관계자의 항공료 등
- 회의비는 최소한의 비용으로(300,000원 한도 내) 1회에 한하여 편성  
⇒ 회의비 정산 시 회의개요, 회의내용(회의록), 회의사진 등 제출  
⇒ **회의비로 식비 사용 시, 불인정(임직원 포함)**  
⇒ 회의장소 대관, 회의에 필요한 사무용품, 회의자료 인쇄, 다과만 허용
- 유형1 전문체육 육성지원(①)의 경우 지원대상 증빙자료 필수(선수등록증 등)
- 유형1 프로그램(②) 및 행사(④) 사업의 경우 체육용품은 선정금액의 40%이내에서 편성한다.

- 유형2 홍보비는 선정금액의 15%이내에서 편성(대회영상 생중계 송출 권장)
-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

사업유형		참 고 사 항
전문체육 육성지원	용품지원	대상모집, 선정기준, 선수/입상현황(창단일 포함), 지원방안, 활용계획, 홍보 등
	전지훈련	지도자연락처, 선수/입상현황(창단일 포함), 일자별(시간별)계획 등
	지도자교육	참가자현황, 일자/시간별 계획, 강사프로필, 교육내용, 안전대책, 홍보 등
대면, 비대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	교실운영	운영방법(시간,장소,지도횟수,참여인원,용품내역), 지도자 등 운영인력현황 참가자모집, 프로그램내용, 안전대책, 홍보 등
	강습회	
	캠프	참가자현황, 일자/시간별 계획, 강사프로필, 교육내용, 안전대책, 홍보 등
배려계층 용품지원	용품지원	대상모집, 선정기준, 배려계층현황, 지원방안, 물품관리/활용계획, 홍보 등
각종 대회 및 체육행사지원	이벤트행사	대회종별(세부종별), 행사일정/개·폐회식순, 시상계획, 참가자모집, 대회규정(종별, 참가자격, 경기방법, 기타), 용품현황, 운영인력현황(심판, 진행 등), 준비사항, 안전대책, 홍보 등
	각종대회	

\* 사업유형별 목적, 필요성, 기대효과를 명확히 기재

\* 세부추진 계획은 해당 사업유형별로 참고사항 외 기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

## ○ 보조금 예산편성 비목 ☞ 사업계획서 '비목별 산출내역' 수립시 단가 등 적용

비 목	편 성 기 준	
	편성기준	단 가
심판비 및 운영 요원비	대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심판, 강사, 운영요원 수당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판비 : 종목단체별 규정 적용 지급 (체육단체 자체 규정 없을 시 중앙경기 단체 규정 적용)</li> <li>- 강사비: 1인 1일 120,000원 이내 편성</li> <li>- 운영요원 : 1인 1일 70,000원* 이내 * 최저시급을 고려한 비용 (자격증이 없거나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보조인력) (자격증 소지로 운영요원 인건비 상향 불가)</li> <li>* 동일인 월125,000원 초과지급시 원천징수 (기타소득 8.8%)</li> </ul>
인쇄비	사업추진 시,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, 책자, 포스터, 배너, 입간판 등 제작하는 경우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</li> <li>- 경기도 재정 지원 의무 표기 (경기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입니다.)</li> <li>* 경기도체육회 후원명칭승인신청과 별개</li> </ul>
홍보비	사업추진시, 홍보를 위하여 각종 미디어에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형2 홍보비는 선정금액의 15% 이내 편성</li> </ul>
숙박비	대회기간중 종목단체 경기 운영 인력 숙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(1박) 70,000원 이내 실비적용</li> </ul>
식 비	대회기간중 종목단체 경기 운영 인력 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식 8,000원 (1일 25,000원)</li> <li>* 주류비 지출 불가</li> <li>- 보조 및 간접보조사업자 임직원 지급 불가</li> </ul>
임차비	사업추진시 필요한 기자재 임차비, 시설대관료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임차비 실비 적용</li> <li>- 사용기간 명시</li> </ul>
일반 용역비	사업추진시 전문성이 필요한 기자재 설치, 영상제작, 행사운영비 등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용역업체 선정 시, 선정 기준 반드시 참고</li> </ul>
물품 구입비	경기운영시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(경기용품, 단체복 등) 훈련, 지원사업에 필요한 용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</li> <li>* 단체복 구입 시, 견적서 및 사전검수서 제출</li> <li>- 단체복은 50,000원* 이내 편성 *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자침 근거</li> <li>- 유형 1-① 개인 훈련용품이 지급되는 경우 선수 서명 필수</li> </ul>

### ※ 수의계약 참고 사항

- 업체 선정 시, 공개입찰을 통한 진행이 원칙이나, 2천만원(세금별도) 이하 금액은 수의계약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.
  -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기업 등\*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(세금별도) 까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.
- \* '취약계층 고용비율 30% 이상'인지 반드시 확인